



#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총4건

## 검 토 보 고

〈정보경찰 기능 분리 및 국무총리 산하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1543호)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1545호)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1547호)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1551호)

2021.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규 찬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1.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 1  |
|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 1  |
|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1  |
| 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2  |
| III . 검토의견 .....                            | 3  |
| 1. 총괄 .....                                 | 3  |
| 2. 입법배경 및 국가안전정보처 설립 필요성 .....              | 5  |
| 3. 정보경찰 조직·인력 현황 .....                      | 10 |
| 4. 제정안의 기본 체계 .....                         | 11 |
| 5. 주요내용별 검토 .....                           | 12 |
| (1) 목적 및 설치(안 제1조, 제2조) .....               | 12 |
| (2) 국가안전정보처의 직무(안 제3조) .....                | 14 |
| (3) 처장(안 제4조) .....                         | 24 |
| (4) 조직구조: 차장, 직제, 지부(안 제5조, 제6조, 제9조) ..... | 25 |

|                                                                |    |
|----------------------------------------------------------------|----|
| (5) 파견공무원(안 제7조) .....                                         | 29 |
| (6) 정치 관여 금지 및 비밀 누설 금지(안 제8조, 제13조) .....                     | 30 |
| (7)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안 제10조) .....                             | 35 |
| (8) 직무 수행 관련 규정: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직무수행의 원칙<br>(안 제11조, 제12조) ..... | 36 |
| (9) 벌칙(안 제14조) .....                                           | 37 |
| (10) 부칙 및 기타 .....                                             | 38 |

## ※ 참고자료

|                             |    |
|-----------------------------|----|
| 정보경찰 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 40 |
|-----------------------------|----|

## I. 제안경위

### 1.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가. 발 의 자 : 김웅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1. 7. 16.

다. 회부연월일 : 2021. 7. 19.

###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발 의 자 : 김웅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1. 7. 16.

다. 회부연월일 : 2021. 7. 19.

###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발 의 자 : 김웅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1. 7. 16.

다. 회부연월일 : 2021. 7. 19.

### 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발 의 자 : 김웅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1. 7. 16.

다. 회부연월일 : 2021. 7. 19.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경찰은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앙집권적 단일 조직의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 경찰은 독점적인 국내정보 수집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것으로 일제 경찰사범의 잔재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우리나라 정보경찰은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라는 직무규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경찰업무를 수행 하고 있으나, 정보경찰이 실제로 수집하고 있는 정책정보 및 치안정보는 범죄의 수사 또는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불필요한 정보들이 대부분임.

특히,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정보국 외근 정보관들의 전체 업무 중 ‘범죄첩보’ 작성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정보경찰은 본연의 범죄첩보 수집 보다는 이외 다른 목적을 위해 존재함을 방증하고 있음.

이에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의 결합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및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려는 것임.

### Ⅲ. 검토의견

#### 1. 총괄

최근 권력기관 개혁 추진 결과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범위가 축소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등 경찰의 수사권한이 확대되었고,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범위가 국외·북한·방첩 등으로 제한되어 경찰청이 국내 정보활동을 독점하게 되었음<sup>1)</sup>.

나아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경찰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비대해진 상황에서, 경찰의 독점적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이 결합되어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취지에서 경찰에서 정보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바,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 관련 법률안들은<sup>2)</sup> 경찰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 권한을 삭제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여 국내 정보 수집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1) 2018.1.14.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문’을 공개하여 국내정치정보 수집 금지를 명시한 바 있으며, 2020.12.10.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정보기능을 삭제하고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 등의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음.

2) 이하에서는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 및 경찰 관련 일부개정법률안들을 통칭하여 “제정안 및 관련 개정안들”이라고 칭하기로 함.

##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관련 21대 국회 법률안 발의 현황>

| 연번 | 소관            | 의안                                                  | 주요 내용                                                                                                                                                                                                                                                                    |
|----|---------------|-----------------------------------------------------|--------------------------------------------------------------------------------------------------------------------------------------------------------------------------------------------------------------------------------------------------------------------------|
| 1  | 행정안전위원회       |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br>(제2111543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내 정보 수집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안전정보처 설치</li> <li>○ 처장, 차장 및 직원의 정치 관여 금지 + 직원이 상부로부터의 정치 관여 행위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 이의제기 절차 등 규정</li> <li>○ 직원 등의 비밀 누설 금지 + 위반시 처벌</li> <li>○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규정 + 제공받은 정보의 목적 외 사용 시 처벌</li> </ul> |
| 2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br>(제2111545호)                  | ○ 경찰관 직무의 범위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삭제                                                                                                                                                                                                               |
| 3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br>(제2111547호) | ○ 경찰의 임무 규정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삭제                                                                                                                                                                                                                |
| 4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br>(제2111550호)                     | ○ 정년 관련 규정에서 ‘정보’ 부문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 삭제                                                                                                                                                                                                                                      |
| 5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br>(제2111544호)                      | ○ 국내 치안정보 수집 등 정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
| 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br>(제2111549호)                      | ○ 해양경찰 직무의 범위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삭제                                                                                                                                                                                                              |
| 7  |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br>(제2111548호)                        | ○ 국회에서 국가안전정보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정보위원회로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국가안전정보처장을 추가                                                                                                                                                                                               |
| 8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br>(제2111550호)                     | ○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국가안전정보처장을 추가                                                                                                                                                                                                                                    |

## 2. 입법배경 및 국가안전정보처 설립 필요성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이 금지되고 검찰의 수사권 축소에 따라 대공수사권이 2023년부터 경찰청으로 이관될 예정인 상황에서, 수사기능과 정보기능이 결합된 기관인 경찰의 권력이 과도해져 인권침해 뿐 아니라 국가기관간 권력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정보경찰의 부적절하고 과도한 정보 수집 행위는 수사권 조정 논의 이전에도 지적의 대상이 되었음.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2018.4.27.) 권고문을 통해 경찰청은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해서 개별 기능별로 구체적인 수권 규정을 마련하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671호)상 경찰청 정보국(現공공안녕정보국)의 사무 중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를 정부 차원에서 업무의 이관·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진행하며,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는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로 이관하고, 현재 정보기능의 업무 중 공공안녕 기능과 무관한 대외협력과 집회 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 역시 경찰청의 다른 부서로 이관을 추진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최한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경찰 개혁방안 토론회’(2018.7.5.)에서도 정보경찰의 정책정보기능을 전면 폐지하고 집회·경비·안전사고 상황정보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sup>3)</sup>, 정보경찰

수행 업무를 경찰 내 다른 부서나 다른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sup>4)</sup> 등이 제시된 바 있음.

이에 2020년 12월 국회에서는 기존 ‘치안정보’의 개념을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구체화하고, 경찰의 정보수집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된 법제화가 진행되었음.

### <주요 개정·신설 내용(‘20.12.9. 국회 통과)>

| 법률      | 주요 개정·신설 내용(‘20.12.9. 국회 통과)                                                      |
|---------|-----------------------------------------------------------------------------------|
| 경찰법·경직법 | ▶ ‘치안정보’ →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br>▶ 정보수집 근거를 담은 명확한 수권규정 신설            |
| 경찰공무원법  | ▶ 정치관여 금지조항 신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자격정지<br>cf.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 금지) → 3년 이하 징역·자격정지 |

이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위임한 정보의 구체적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고(’21.3.23.), 「정보경찰 활동규칙」(경찰청 훈령, ‘19.1월 제정)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21.6.14.)되는 등 하위 법령의 후속 입법조치 역시 이루어진 상황임.

3) 박병욱 교수(제주대학교 행정학과), 토론회 자료집 p.51

4) 오병두 교수(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토론회 자료집 p.75

그러나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입법예고 안에 대하여 경찰개혁네트워크에서는<sup>5)</sup> 경찰의 직무에서 △정책정보 삭제 △신원조사 삭제 △집회시위 관련 정보 삭제가 필요하다는 주장 등을 포함하여 입법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등 정보경찰 개혁 관련 제도화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음.

정보경찰과 관련된 위의 비판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안전정보처 설치의 필요성으로는 ① 경찰력 분산을 통하여 국가기관 권력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② 국무 조정을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이 사회 제 분야 현안, 정책정보 수집 등 정보활동을 수행할 경우 국정 관리 기능 강화가 기대된다는 점, ③ 경찰 본연의 직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정보업무 조정을 통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본연의 직무에 대한 집중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반면 경찰청은 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으로, ① 경찰은 법령에 근거하여 제한된 범위에서만 정보를 수집하고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있으므로 정보의 독점 우려가 없고, ② 제·개정안들에 따르면 경찰의 기본업무 수행과 불가분적 관계가 있는 정보활동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어 법률상 경찰의 임무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며, ③ 정보경찰이 분리될 경우 기능간 정보공유 실패 및 정보의 신속·적시성 저하로 국민의

---

5) 경찰개혁네트워크의 구성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생명·안전 보호 임무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입장임.

나아가, 앞서 제시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는 정보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경우 경찰활동의 효율성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 역시 제시된 바 있음<sup>6)</sup>.

따라서 국가안전정보처의 설치 여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확대된 경찰의 권한의 통제 필요성, 최근 정보경찰 개혁 관련 제도화에 따라 마련된 법적 통제장치의 효과성, 정보경찰 기능의 타 기관 이전 시 발생할 효과 및 부작용, 국가안전정보처의 직무 범위 등 제정안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됨.

참고로, 세계 주요국가 경찰의 정보활동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세계 주요국가 경찰의 정보활동 현황>

| 국가명 | 경찰의 정보활동 내용                                                                                                                                                                                                                                                                                                                                                                                                                                                                                                                             |
|-----|-----------------------------------------------------------------------------------------------------------------------------------------------------------------------------------------------------------------------------------------------------------------------------------------------------------------------------------------------------------------------------------------------------------------------------------------------------------------------------------------------------------------------------------------|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9·11테러 이후 '05년 신설된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실(ODNI)이 국내 정보기관 조율<br/>※ 중앙정보국(CIA, 해외정보)·부처 정보기관(16개) 등 총 18개 정보기관이 활동</li><li>◦ 9·11테러를 계기로 FBI가 강력한 정보기능 수행, <u>'정보 주도 경찰활동'을 전국으로 확대</u>하여 <u>50개 주 경찰도</u> 정보부서를 두고 <u>국가안보·공공안전 관련 정보 수집</u><ul style="list-style-type: none"><li>▶ &lt;LAPD&gt; '대테러·특수작전국'에서 <u>인종·종교 등 차이로 인한 갈등 관련 정보 수집</u></li><li>▶ &lt;NYPD&gt; '정보국'을 두고, <u>범죄·테러 등 공공안전 관련 정보 수집</u></li><li>▶ &lt;워싱턴DC&gt; '국토안보국' 산하 '정보과' 등에서 <u>치안활동·공공안녕 관련 정보 수집</u></li></ul></li></ul> |

6) 장영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회 자료집 p.69

|     |                                                                                                                                                                                                                                                                                                                                                                                                                                                                                           |
|-----|-------------------------------------------------------------------------------------------------------------------------------------------------------------------------------------------------------------------------------------------------------------------------------------------------------------------------------------------------------------------------------------------------------------------------------------------------------------------------------------------|
| 영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안부(MI5)가 국내 정보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나, <u>최근 영국 경찰은 '정보주도형 경찰활동'(ILP, Intelligence-led Policing)이 강조되고 있음</u></li> <li>정보활동의 범위를 <u>지역·광역·국가적 문제의 3단계로 구분하는 국가정보모델(NIM) 도입</u>, 범죄정보뿐만 아니라 <u>사회의 잠재적 위험과 갈등과 관련된 정보 수집</u></li> </ul>                                                                                                                                                                                                                       |
| 프랑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무부 국내안보총국(DGSI)과 <u>경찰청 중앙국토정보부(SCRT)가 국내정보 담당</u>, 경찰청은 <u>'기관, 경제·사회 분야, 폭력현상 등 공공질서 관련 모든 정보' 수집</u></li> <li><u>경찰청 중앙국토정보부(SCRT)는 '사회·경제정보과', '공동체·사회문제과' 등 7개 부서를 두고, 공공갈등 관련 정보 수집</u> → '노란조끼' 시위*(18. 11월) 담당</li> </ul> <p>* 유류세 인상을 계기로 反정부 시위로 확산, 주변국(이탈리아·독일·벨기에 등)에도 영향</p>                                                                                                                                                        |
| 독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수사·정보기관 분리' 원칙에 따라, 해외정보는 총리실 산하 연방정보원(BND), 국내정보는 내무부 산하 연방헌법보호청(BFV)이 담당</u></li> <li>또한, <u>州 경찰도 일반 예방활동(경비·교통·방범·범죄 우려자 정보) 등 직무 관련 '위험 방지'를 위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수집하고 있음</u></li> </ul> <p>※ 바이에른州, '17년 「경찰직무법」을 개정하여 독일 최초로 '우려되는 위험'을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도입 → '구체적 위험' 발생 前 단계에서도 직무범위 內 정보수집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경찰법모범초안 개정시안 제8조는 △ 집회·다중행사 △ 위험방지 △ 범죄 등을 수집 대상으로 규정, <u>공공안녕·질서에 대한 위험 예상 시 개인정보 수집 가능</u></li> </ul> |
| 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국내정보는 법무성 소속 '공안조사청'과 '경찰청'이 담당</u>하며, 총리실 소속 '내각 정보조사실'에서 정보기관 間 통합·조율</li> <li><u>경찰청은 임무조항인 경찰법 제2조 '기타 공공의 안전·질서 유지'를 근거(판례에서도 인정)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공안 관련 모든 분야 정보 취급</u></li> <li>경찰서 공안과는 <u>요원별 담당 기관을 정해 정보 수집</u>, 지·파출소(주재소·교번) 직원들은 각 담당구역에 관한 첩보 수집</li> </ul>                                                                                                                                                                       |

※ 자료: 경찰청

### 3. 정보경찰 조직·인력 현황

정보경찰은 경찰청(본청) 공공안녕정보국, 시도경찰청·경찰서 정보부서에 근무하는 경찰을 뜻하며, 본청·18개 시도청·258개 경찰서에 정보경찰이 근무 중이고 2021년 10월 31일 기준 현원은 2,972명임.

#### < 정보경찰 인력·조직 현황(2021. 10. 31. 기준) >

| 구분       | 계     | 본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南          | 경기北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정원       | 2,987 | 127                   | 630          | 211          | 133          | 149          | 86      | 84      | 61      | 25      | 295          | 120          | 143          | 101          | 126          | 136          | 157          | 187          | 179          | 37      |
| 현원       | 2,972 | 130                   | 624          | 207          | 133          | 147          | 85      | 82      | 61      | 26      | 293          | 124          | 141          | 100          | 125          | 138          | 156          | 187          | 175          | 38      |
| 조직 또는 개소 | -     | 1국<br>4과<br>11계<br>6팀 | 31<br>개<br>쪽 | 15<br>개<br>쪽 | 10<br>개<br>쪽 | 10<br>개<br>쪽 | 5개<br>쪽 | 6개<br>쪽 | 5개<br>쪽 | 2개<br>쪽 | 31<br>개<br>쪽 | 13<br>개<br>쪽 | 17<br>개<br>쪽 | 12<br>개<br>쪽 | 15<br>개<br>쪽 | 15<br>개<br>쪽 | 21<br>개<br>쪽 | 24<br>개<br>쪽 | 23<br>개<br>쪽 | 3개<br>쪽 |

※ 자료: 경찰청

#### 4. 제정안의 기본 체계

제정안은 별칙 조항을 포함한 본칙 14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정안 본칙 체계>

| 조문   | 내용               |
|------|------------------|
| 제1조  | 목적               |
| 제2조  | 국가안전정보처의 설치      |
| 제3조  | 국가안전정보처의 직무      |
| 제4조  | 처장               |
| 제5조  | 차장               |
| 제6조  | 직제               |
| 제7조  | 파견공무원            |
| 제8조  | 정치 관여 금지         |
| 제9조  | 지부               |
| 제10조 |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 제11조 | 자료 제공의 요청 등      |
| 제12조 | 직무수행의 원칙         |
| 제13조 | 비밀 누설 금지 의무      |
| 제14조 | 별칙               |

## 5. 주요내용별 검토

### (1) 목적 및 설치(안 제1조, 제2조)

제정안은 국가안전정보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내 정보 수집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정보처를 설치하려는 것임.

| 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정보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국가안전정보처의 설치) 국내 정보 수집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정보처를 둔다. |

안 제1조 목적 조항의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안 제2조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국가안전정보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있는데,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안전정보처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인사 검증 자료 수집 등을 담당하고 있는바 국무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국가정보원과 같이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방안 역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제정안은 ‘국내 정보 수집에 관한 직무’를 국가안전정보처의 설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 정보’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국가안전정보처의 직무를 국내 정보의 ‘수집’으로 제한하지 않고 국내 정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제정안이 의도하는 국가안전정보처의 직무 내용을 온전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 「정부조직법」상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2024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가 직무범위에서 배제되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에 관한 사무’만을 담당하게 됨.

## (2) 국가안전정보처의 직무(안 제3조)

제정안은 국가안전정보처의 직무로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범죄 또는 치안 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자료 수집을 규정하려는 것임.

| 제 정 안                                                                                                                                                                                                 |
|-------------------------------------------------------------------------------------------------------------------------------------------------------------------------------------------------------|
| 제3조(국가안전정보처의 직무) ① 국가안전정보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br>1.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br>2. 범죄 또는 치안 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br>3. 국가 및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자료 수집<br>②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안전정보처의 직무는 현행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하여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보 관련 업무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근거하여 경찰청이 수행하는 정보 관련 업무의 일부를 통합하여 규율한 것으로 보임.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청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직무를 삭제하고 있는바, 제정안은 정보경찰 기능을 경찰청에서 분리하여 국가안전정보처로 이관하기 위해 해당 직무를 국가안전정보처의 직무로 규율하는 것임.

제정안 및 관련 개정안들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먼저, 안 제3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안 제3조제1항제1호는 국가안전정보처의 직무로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면서 해당 정보 수집 활동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 한계 등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침익적 행정작용에 대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존재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경찰작용은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을 엄격히 요구하는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행위 역시 헌법상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정작용으로서 기본권제한원리에 따라 구체적인 권한규범을 요함<sup>7)</sup>.

---

7) 「정보경찰 개혁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송무빈, 2020. 6., p.69

경찰이 수행하는 정보 관련 업무에 작용법적 위임 근거가 없다는 비판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이에 따라 기존의 ‘치안정보’ 개념이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대체되었고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의 근거를 규정하고자 법 제8조의2가 신설되었음<sup>8)</sup>).

그런데 제정안 및 관련 개정안들에 따르면, 기존에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하여 수행해오던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업무를 국가안전정보처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의 정보 수집에 관한 규정을 일괄 삭제하면서,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에서 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 및 처리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부분은 제정안에 반영하지 않은바, 국가안전정보처에서 수행하게 될 정보 관련 행정작용이 구체적인 수권 근거를 결여하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8) 다만, 신설된 법 제8조의2는 경찰이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범죄·재난·공공갈등 등’으로 예시하고 있을 뿐 그 이상으로 법률에서 직접 경찰이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규정하지 않고 그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여전히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는 의견도 존재함.(「정보경찰 개혁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송무빈, 2020. 6., p.6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웅의원 대표발의)의 내용>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br>1. ~ 3. (생략)<br>4. <u>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u><br>5. ~ 7. (생략)<br>제8조의2(정보의 수집 등) ① 경찰관은 <u>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u><br>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조(직무의 범위) -----<br>-----.<br>1. ~ 3. (현행과 같음)<br><u>&lt;삭제&gt;</u><br><br>5. ~ 7. (현행과 같음)<br><u>&lt;삭제&gt;</u> |

또한 제정안 및 관련 개정안들에 따르면 경찰청의 직무 범위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 예방·대응 관련 정보활동이 삭제되고 해당 직무가 국가안전정보처로 이관되는데, 정보기능 소속 경찰관뿐만 아니라

모든 경찰관들의 기본업무 수행 과정이 일정한 정보 수집 등 활동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경찰관의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안 제3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제정안 제3조제1항제2호는 국가안전정보처의 직무로 ‘범죄 또는 치안 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정보경찰 개혁 관련 법제화를 통해 그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던 ‘치안 정보’의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대체하였으므로 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다음으로, 안 제3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현재 경찰청은 대통령비서실에서 수행하는 대통령 임명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에 필요한 자료(소위 “세평”)를 수집·생산·보고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이러한 업무가 경찰 본연의 직무인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 기존에 경찰이 수행하던 인사검증 관련 업무를 국가안전정보처로 이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기본적으로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 등 공직 후보자에 관한 정보 수집·관리 권한은 「국가공무원법」상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이지만, 관계 법령상 위탁규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에서 수행하고 있음.

### <대통령비서실의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① 인사혁신처장은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공무원 채용시험 위원, 위원회 위원 및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 등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하 “공직후보자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0조(권한 위탁) 국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조의2(권한의 위탁)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0조 또는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사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위탁한다.

② 대통령비서실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찰청은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업무 협조 차원에서 대통령비서실에서 요구하는 인사검증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오고 있는바, 그 직무수행의 근거로 경찰청은 2020년 12월 신설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및 그 위임을 받은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에 따라 경찰관은 ‘9.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위탁받은 신원조사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점을 들고 있음.

###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관계법령상 경찰의 정보수집 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정보의 수집 등) ① 경찰관은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수집 등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정보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6조의2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에 따라 통보되는 정보의 대상자인 수형자·가석방자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3. 국가중요시설의 안전 및 주요 인사(人士)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4. 방첩·대테러활동 등 국가안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정보
5. 재난·안전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
6. 집회·시위 등으로 인한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정보
7.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에 관한 정보[해당 정책의 입안·집행·평가를 위해 객관적이고 필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하며, 이와 직접적·구체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생활·신조(信條) 등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                                                                                                                                                                                                                    |
|--------------------------------------------------------------------------------------------------------------------------------------------------------------------------------------------------------------------|
| <p>8. 도로 교통의 위해(危害) 방지·제거 및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한 정보</p> <p>9.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위탁받은 신원조사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정보</p> <p>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정보</p> |
|--------------------------------------------------------------------------------------------------------------------------------------------------------------------------------------------------------------------|

그러나 이에 대하여, 고위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에 관한 자료 보고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과 직결된 직무로 볼 수 없고,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의 결합이 경찰의 비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바, 해당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제정안은 국가 및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자료 수집 권한을 수사기관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정보처에 이관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이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정보원 훈령)에 근거하여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신원조사 업무에 대하여도,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과 관련된 직무로 볼 수 없어 경찰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로 이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sup>9)</sup>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신원조사 업무의 경우 △공직 인사 △비밀취급 인가 △국가보안시설 관리자 등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국가안보(비밀누설 시 국가안보에 막대한 지장)를 위한 예방적 활동으로서

9) 경찰개혁위원회, 경찰개혁네트워크 등

‘공공안녕 위협 정보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대통령비서실의 요청에 따른 인사검증 자료 수집 등의 업무는 전국적인 조직·인력을 보유하여 평판 관련 정보 수집이 용이한 경찰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임.

###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 관련 규정>

**제3조(보안책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계 기관(각급기관과 제33조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해당 관리 대상에 대하여 보안책임을 진다.

#### 2.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

**제36조(신원조사)**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충성심·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삭제

③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1. 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삭제

4.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5. 삭제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따라서 국가 및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관련 자료 수집 업무를 경찰청이 아닌 국가안전정보처에서 수행하도록 할지 여부는 국가안전정보처에서 인사검증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수사

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인사검증 관련 자료를 수집토록 할 경우 정치적 사찰 가능성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지,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가 공공안녕 위협의 예방·대응과 직결된 업무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국가안전정보처는 국내 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정책정보<sup>10)</sup>, 사회 각 분야 정보에 관한 업무를 직무에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정보경찰의 경우, 개정 전 경찰청 직제상<sup>11)</sup> 직무로 규정된 정책 정보 활동이 경찰청 본연의 직무인 치안사무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에 2020년 12월 제도화를 통해 정보국의 명칭을 ‘공공안녕정보국’으로 바꾸면서 공공안녕정보국의 정책정보 관련 사무를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로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한 바 있음.

---

10) 정책보고는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보고로, 주로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하여 시행상의 문제점이나 개선 요망사항, 치안질서 또는 치안정책에의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작성된 정보보고서를 의미함.(문경환·이창무, 「경찰정보학(제3판)」, 박영사, 2019, p.202)

1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0.10.30., 대통령령 제31132호, 2020.10.30. 일부개정) 제 14조(정보국) ① 정보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정책관등 1명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4. 집회·시위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5.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 (3) 처장(안 제4조)

제정안은 국가안전정보처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함.

| 제 정 안                                                                                                                                                          |
|----------------------------------------------------------------------------------------------------------------------------------------------------------------|
| 제4조(처장) ① 국가안전정보처에 국가안전정보처장을 둔다.<br>② 국가안전정보처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br>③ 국가안전정보처장은 국가안전정보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br>④ 국가안전정보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

제정안은 정보 업무의 중요성, 국가안전정보처장의 정치적 중립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청문 제도 등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국가안전정보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인데, 제정안에 따르면 처장의 임명 과정에서 국무총리가 관여하는 절차가 부재하므로, 대통령 임명 이전 국무총리의 제청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음.

임기의 경우, 유사 입법례로서 국가정보원장은 임기와 관련하여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고, 경찰청장은 임기가 2년으로 중임이 불가한 점 등 타 기관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4) 조직구조: 차장, 직제, 지부(안 제5조, 제6조, 제9조)

제정안은 경찰청, 국가정보원과 유사하게 차장, 내부 부서, 지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 정 안                                                                                                                                                                                                                             |
|-----------------------------------------------------------------------------------------------------------------------------------------------------------------------------------------------------------------------------------|
| 제5조(차장) ① 국가안전정보처에 차장을 둔다.<br>② 차장은 국가안전정보처장을 보좌하며, 국가안전정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6조(직제) ① 국가안전정보처에 국 또는 부 및 과를 두고, 국 또는 부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② 제1항의 국 또는 부 및 과에는 각각 국장, 부장 및 과장을 둔다.<br>③ 제2항의 국장, 부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국·부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br>④ 국가안전정보처 직원의 정원은 30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9조(지부) ① 국가안전정보처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5개 이내의 지부를 둔다. 지부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② 지부에 지부장을 둔다.<br>③ 지부장은 국가안전정보처장의 명을 받아 지부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차장 등 주요 간부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게 차장의 직무만을

규율하고 있으나, 「국가정보원법」은 차장의 직무뿐만 아니라 그 신분(정무직)과 임명 절차(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까지 규정하고 있고, 차장 외에 기획조정실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내부 부서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하부조직으로 국·부·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치와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분장 사무 등을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의 조직은 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할 뿐 별도의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지부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국가안전정보처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5개 이내의 지부를 두도록 하고 그 설치와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국가정보원법」은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고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시·도자치경찰청 및 경찰서 등에 관한 별도 장을 마련하여 지역 조직을 세밀하게 규율하고 있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상 조직구조 관련 규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br>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정보원법」                                                                                                                                                                                                                                                                                                                                                                       |
|-----------------------------------------------------------------------------------------------------------------------------------------------------------------------------------------------------------------------------------------------------------------------------------------------------------------------------------------------------------------------------------------|--------------------------------------------------------------------------------------------------------------------------------------------------------------------------------------------------------------------------------------------------------------------------------------------------------------------------------------------------------------------------------|
| <p>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 기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p> <p>제15조(경찰청 차장) ① 경찰청에 차장을 두며, 차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한다.</p> <p>② 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7조(하부조직) ① 경찰청의 하부조직은 본부·국·부 또는 과로 한다.</p> | <p>제6조(조직) ① 국정원의 조직은 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제4조에 따른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국정원은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p> <p>제7조(직원) ① 국정원에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을 2명 이상 둘 수 있다.</p> <p>②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p> |

|                                                                                                                                                                                                               |  |
|---------------------------------------------------------------------------------------------------------------------------------------------------------------------------------------------------------------|--|
| <p>② 경찰청장·차장·국가수사본부장·국장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p> <p>③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 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p> <p>제5장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p> |  |
|---------------------------------------------------------------------------------------------------------------------------------------------------------------------------------------------------------------|--|

조직구조와 관련된 규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정보원법」 등 유사 기관의 법률 내용, 체계 및 국가안전정보처의 직무, 설립 취지, 현 정보경찰의 조직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됨.

다만, 제정안 제6조제4항은 국가안전정보처 직원의 정원을 30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경찰청 본청 공공안녕정보국 및 시·도경찰청, 경찰서 정보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보경찰이 약 3,00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국가안전정보처에서 수행하게 되는 정보 업무를 300명 이내의 인원으로 충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5) 파견공무원(안 제7조)

제정안은 직무상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및 경찰청을 제외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 제 정 안                                                                                         |
|-----------------------------------------------------------------------------------------------|
| 제7조(파견공무원) 국가안전정보처의 직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다만, 대검찰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파견받을 수 없다. |

이는 수사기관과 정보기관 간 분리를 통해 정보기능의 정치적 중립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는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의 경우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 별도의 인사관계법인 「경찰공무원법」 및 「국가정보원직원법」을 두고 있는데, 국가안전정보처의 경우 별도의 인사관계법 제정안이 발의되지 않아 소속 직원의 자격, 임용 등에 관한 규율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6) 정치 관여 금지 및 비밀 누설 금지(안 제8조, 제13조)

제정안은 국가안전정보처장, 차장과 그 밖의 직원에 대한 정치 관여 금지와 정치 관여 행위를 요구받은 경우 이의 제기 절차와 직원의 재직 중 및 퇴직 후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함.

| 제 정 안                                                                                                                                                                                                                                                                                                                                                                                                                                                                                                                                                                                                                                                                                                                                                                                                                                                                                     |
|-------------------------------------------------------------------------------------------------------------------------------------------------------------------------------------------------------------------------------------------------------------------------------------------------------------------------------------------------------------------------------------------------------------------------------------------------------------------------------------------------------------------------------------------------------------------------------------------------------------------------------------------------------------------------------------------------------------------------------------------------------------------------------------------------------------------------------------------------------------------------------------------|
| <p>제8조(정치 관여 금지) ① 국가안전정보처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li> <li>2. 정치 개입·관여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 정당·정치인 및 언론에 대한 동향파악·자료수집·감시 등 정치적 사찰 행위</li> <li>3.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에 대한 의견 또는 사실을 타인에게 제공·유포하는 행위</li> <li>4.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li> <li>5.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에 관여 의견 또는 사실을 타인에게 제공·유포하는 행위</li> <li>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li> <li>7.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하여 보상 또는 보복으로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li> </ol> <p>③ 직원은 국가안전정보처장, 차장과 그 밖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제2</p> |

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 국가안전정보처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직원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제1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비밀 누설 금지 의무) ① 국가안전정보처 소속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령에 따른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안전정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직원을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 신청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 관계인은 해당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국가안전정보처장에게 증언 또는 진술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국가안전정보처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거부하지 못한다.

⑤ 직원이 국가안전정보처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안전정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국가안전정보처장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증언 또는 진술을 허가한 경우 법원은 공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한 비공개 증언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은 국가안전정보처장, 차장 및 직원들의 직무 수행상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한 취지로 보이며, 「국가정보원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존재함.

###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규정>

- 제11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특정 정치단체를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기업의 자금,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지원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특정 정당·정치단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집회를 주최·참석·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유도·권유·회유 또는 협박하는 행위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7.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 ③ 직원은 원장, 차장·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직원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직원이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원장은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누구든지 제4항의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경찰의 사찰행위로 인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정안의 내용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안 제2항제2호의 ‘동향파악·자료수집·감시 등 정치적 사찰 행위’의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을 심사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참고로, 「국가정보원법」은 제정안의 내용에 더하여 직원이 정치관계 행위를 지시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이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직원의 비밀 누설 금지의 경우, 「국가정보원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바, 국가안전정보처에서 관리하는 정보가 개인정보뿐 아니라 국정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일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직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 <「국가정보원법」상 비밀 누설 금지 규정>

- 제17조(비밀의 엄수) 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직원(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령에 따른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직원을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 신청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 관계인은 해당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장에게 증언 또는 진술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거부하지 못한다.
- ⑤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
- ⑥ 원장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증언 또는 진술을 허가한 경우 법원은 공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한 비공개 증언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7)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안 제10조)

제정안은 처장으로 하여금 국가의 안전보장 및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국가정보원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송부된 목적을 위해서만 정보를 사용하도록 규정함.

| 제 정 안                                                                                                                                                                                                               |
|---------------------------------------------------------------------------------------------------------------------------------------------------------------------------------------------------------------------|
|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국가안전정보처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및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국가정보원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br>② 제1항의 정보를 송부받은 기관은 송부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국내 정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안전정보처의 가장 주요한 역할 중 하나는 타 국가기관과의 원활한 관련 정보 공유에 있다고 보이나,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10조제1항은 정보 제공 대상을 수사기관을 포함한 일부 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반드시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8) 직무 수행 관련 규정: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직무수행의 원칙  
(안 제11조, 제12조)

제정안은 국가안전정보처장이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전정보처 소속 직원의 직무수행상 적법절차 준수 의무, 정치적 중립 및 공정함 유지 의무 등을 규정함.

| 제 정 안                                                                                                                                                       |
|-------------------------------------------------------------------------------------------------------------------------------------------------------------|
| 제11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국가안전정보처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제12조(직무수행의 원칙) ① 국가안전정보처 소속 직원은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정치적 중립과 공정함을 유지하여야 한다.<br>② 국가안전정보처 소속 직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              |

안 제11조는 국내 정보 수집 등 국가안전정보처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보이고, 안 제12조의 경우 국가안전정보처 소속 직원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나 정보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안전정보처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는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소양이라고 할 것인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9) 벌칙(안 제14조)

제정안은 수사기관 등이 국가안전정보처장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은 후 정보가 송부된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비밀 누설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려는 것임.

| 제 정 안                                                                                                                                                                                                                           |
|---------------------------------------------------------------------------------------------------------------------------------------------------------------------------------------------------------------------------------|
| 제1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송부받은 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br>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br>②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이는 제정안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함으로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나아가, 「국가정보원법」은 각종 법률상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에서 기수범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sup>12)</sup> 불구하고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여 특례를 두고 있는 점을 심사에 참고할 수 있을 것임.

12)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 (10) 부칙 및 기타

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고, 기존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사무 중 신설되는 국가안전정보처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안전정보처가 승계하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함.

| 제 정 안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
|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국가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사무 중 이 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무는 이 법에 따른 국가안전정보처가 승계한다. |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경찰법」 제14조에 따른 직무 중 이 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직무는 이 법에 따른 국가안전정보처가 승계한다.                                        |

제정안 및 관련 개정안들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서 정보경찰을 분리하여 별도 기관을 신설하려는 것이므로 조직 신설 및 개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바, 충분한 유예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행일을 정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 시에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유예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 바 있음.

그리고 정보경찰 인력 역시 국가안전정보처로 이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예산 역시 이관되어야 할 것이므로, 국가안전정보처의 조직체계가 완비될 때까지 기존 인력의 신분, 복무관리, 직무수행 등 인사관리 제반 사항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경과조치, 특례 등을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정보경찰은 정치관여·불법사찰 등 과거 부적절한 관행에 대한 반성과 경찰 개혁위원회 권고('18. 4월) 등을 반영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 중임
- 개혁 법제화로 투명·공정한 정보활동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완비된 만큼, 체계적인 준법 정보활동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음

## I. 추진 경과

### □ 정보경찰 개혁 법제화로 투명하고 적법한 정보활동 기반 마련

- 지난 3년간 국회와 논의 끝에 정보활동 범위 명확화·정치관여 시 처벌규정 신설 등 법령 체계 정비, 과거로의 회귀 원천 차단

| 법률      | 주요 개정·신설 내용('20. 12. 9. 국회 통과)                                                    |
|---------|-----------------------------------------------------------------------------------|
| 경찰법·경직법 | ▶ '치안정보' →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br>▶ 정보수집 근거를 담은 명확한 수권규정 신설            |
| 경찰공무원법  | ▶ 정치관여 금지조항 신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자격정지<br>cf.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 금지) → 3년 이하 징역·자격정지 |

- 경직법에서 위임한 정보의 구체적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해 대통령령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3. 23.)

- ▶ **(정보의 구체적 범위)** △ 범죄 △ 재범방지·피해자 보호 △ 국가중요시설·주요인사 보호 △ 국가안전 △ 국민안전 △ 공공갈등·다중운집 △ 공공안녕 위협의 예방·대응을 위한 정책\* △ 도로교통 위해 방지 △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신원조사·사실확인  
\* 객관적·필요한 사항에 한정, 직접적·구체적 관련이 없는 사생활·신조 등은 제외
- ▶ **(절차·한계 등 통제 강화)** △ 정치관여·사찰 등 금지행위(6개 유형) 명시 △ 신분 공개 + 목적설명 + 강제적 방법 금지 의무화 △ 민간단체·정당사무소 상시출입 금지 △ 현장점검·교육 강화 방안 수립 △ 위법한 지시 금지 및 거부 등

- 이후 「정보경찰 활동규칙」(경찰청 훈령, '19.1월 제정)을 경직법·대통령령에 맞춰 개정(6.14.)함으로써 개혁 법제화 마무리
- 개혁 법제화 마무리로 '法(경직법)-대통령령-훈령'의 3단 체계 완비 및 '준법 정보활동의 법적·제도적 기반' 공고화

## □ 내·외부 통제시스템 구축, 일탈 차단 및 준법 정보활동 체질화

- 정보국 內 변호사를 포함한 '준법지원계' 신설('18.7월), 현장점검·준법교육·행정지도 등 정보활동의 적법성 여부 상시 확인·감독
- 대통령령 시행(3.23.) 직후 현장에 직접 진출, 순회교육·현장점검 등을 통해 개혁 법령의 현장 조기 안착에 총력

- ▶ 쏘 시도청·署 순회교육 및 현장점검(법령 준수 여부 점검·컨설팅) 실시
- ▶ 사례·법령 해설 중심의 교육자료 배포를 통해 준법 정보활동 지원 지속

- 현장에서는 법령을 위반한 정보활동은 처벌받는다 인식과 위법·부당한 지시 거부 분위기가 정착되는 등 준법성 제고 확인

- ▶ △관서별 준법책임관 지정 △시도청 준법관리담당 신설 등 체계적 준법지원 체계 구축
- ▶ 대통령령 「정보수집·처리 규정」 제8조(위법한 지시의 금지 및 거부) ⇨ 위법한 지시 금지 및 위법한 지시에 대한 집행 거부·불이익 금지 규정 명시

- 한편, △경찰청 감사관실 정기 사무감사 수감 △국가경찰위원회 보고 실질화 등 중첩적 통제시스템 구축으로 외부통제 강화

## □ 인력 감축 및 정보활동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직·사무 재설계

- △ 채증·소음 업무의 경찰청 경비국 이관에 따른 담당인력 이체  
△ 외근정보관 민생치안 분야 재배치 등 정보경찰 대폭 감축\*

\* '18년 대비 11.1% 감소(3,358 → 2,987명) / 지난 10년간 전체 경찰관은 24.8% 증가했으나, 정보경찰은 16% 감소 ⇨ '사실상 30% 이상 감축' 결과

- 정보부서 소속 국회협력관·정보분실을 폐지('18. 9~10월)하고, 정보경찰의 국회·정당 상시출입도 전면 금지
- '대화경찰' 제도 도입('18. 10월), 현장에서의 소통 확대 및 집회·시위에 대한 관점을 관리·통제에서 인권존중·소통으로 전환

- ▶ 대화경찰, '20년 행정 한류 우수콘텐츠 선정되어 주한 외국공관·재외공관 등에 소개
- ▶ '대화경찰 효과성 연구('20. 10월, 울산대 산학협력단)' 결과,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자유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불법시위 감소 효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

- 또한, 집회신고 접수 장소를 '정보과 사무실 → 민원실'로 변경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하는 등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강화

## Ⅱ. 향후 계획

### □ ‘국민 안전’ 및 ‘위험 예방·대응’ 등 정보경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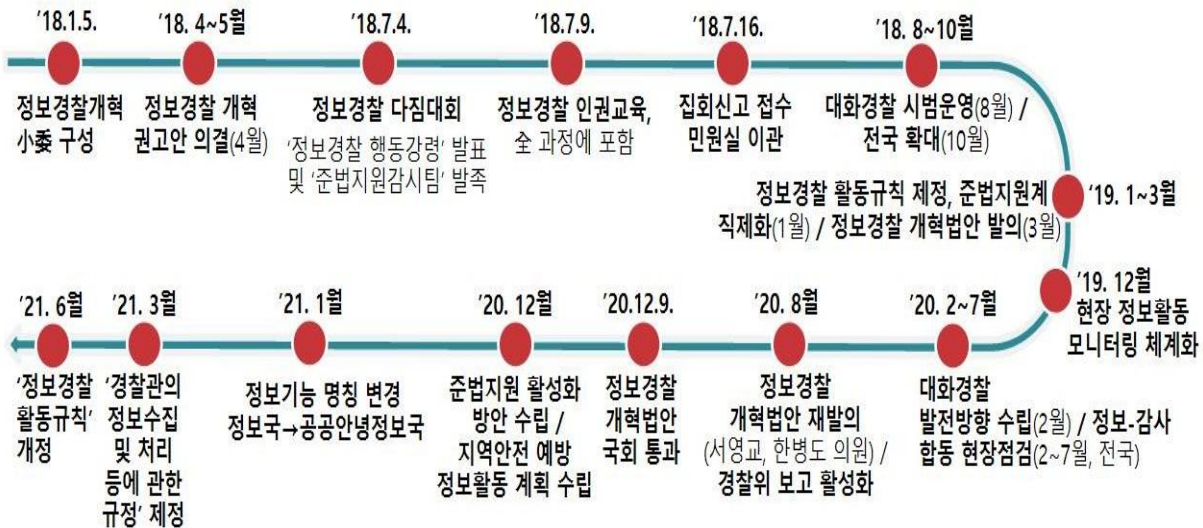
- 정보활동 패러다임을 ‘국민 안전’ 및 ‘위험 예방·대응’ 중심으로 전환한 만큼, 체계적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투명성·공정성 제고
- 특히, 정보경찰 개혁 취지를 반영하여 신설한 △ 지역안전 예방 정보활동 △ 대화경찰 제도 활성화에 집중하고
  - － △ 코로나19 방역 지원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 △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집회시위 대응 등 정보경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

### □ 당당한 정보활동을 위한 전문성 제고 및 준법의식 함양 주력

- 인재 선발 및 관리, 교육 강화 등 인적 쇄신과 정보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보경찰의 전문성 제고\* 추진 계획
  - \* △ 인력풀 구성 △ 사례·법령 중심 업무 매뉴얼 작성 △ 기관간 협업교육 등
- 경찰청에서 全 시도경찰청·경찰서에 수시로 **현장 진출**(9~12월), 컨설팅·교육 등을 통해 준법관리 역량 제고

## [#붙임1] 정보경찰 개혁 경과 및 前·後 비교

### □ 정보경찰 개혁 경과



### □ 정보경찰 개혁 前·後 비교

| 개혁 前                                    | 구분          | 개혁 後                                                             |
|-----------------------------------------|-------------|------------------------------------------------------------------|
| 국회·정당 등 광범위한 출입 → 정치 개입·사찰 논란           | 정치관여 금지 제도화 | - 정보부서 소속 국회협력관 폐지<br>- 大수에 국회·정당 상시출입 금지 명시                     |
| 국가공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조항 적용(징역 3년↓·자격정지)       | 정치중립 강화     | - 경찰공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조항 신설(징역 5년↓·자격정지)                              |
| - 과거 조직구성·업무방식 답습<br>- 정보분실 운영 등 폐쇄적 문화 | 조직·사무 재설계   | - 18년 대비 11.1% 감축(3,358 → 2,987명)<br>- 정보분실 폐쇄, '정보국' 명칭 변경      |
| 명확한 수권조항 없이 '치안정보 수집·작성·배포'만 규정         | 수권조항 마련     | 정보활동 근거를 담은 별도 수권조항 신설 (경직법 제8조의2 제1항)                           |
|                                         | 수집범위 명확화    |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대응 정보'로 구체화                                     |
|                                         | 수집절차 마련     | 大수에 신분공개 의무 및 금지행위 신설                                            |
|                                         | 사찰금지 규정 신설  | 大수에 '사찰' 정의 및 금지의무 명시                                            |
| 내부 훈령에 따라 처리                            | 정보처리 투명화    | 大수에 정보의 사용·폐기 규정 신설                                              |
| 사무감사·경찰청 보고 예외 등 내·외부 통제 미흡 논란          | 제도적 통제 강화   | - 준법지원원계 신설 → 적법성 상시 감독<br>- 내부감사·국가경찰청 보고 강화 등 대내·외 제도적 통제장치 마련 |

## #붙임2) 그간 정보경찰 개혁 주요 경과

- 정부의 ‘국정과제’·‘권력기관 개편안’을 통해 관련 기관 개혁 논의가 태동, 경찰개혁위 발족(’17.6월)을 계기로 경찰개혁 논의도 본격화

|        |                                                                                                                                                                                                                                   |
|--------|-----------------------------------------------------------------------------------------------------------------------------------------------------------------------------------------------------------------------------------|
| ’17.7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국정기획자문위, ‘100대 국정과제 및 세부 이행계획’ 발표</li> <li>※ ‘국정원 → 해외안보정보원’ 개편(대선 공약과 동일) 외 ‘정보경찰 관련 개혁과제’는 없음</li> </ul>                                                                            |
| ’18.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H 민정수석실(조국 민정수석), ‘권력기관 구조개혁안’ 발표</li> <li>▶ (경찰) △국수본·안보수사처 신설 △자치경찰제 확대 / <u>정보경찰</u>은 국가·자치경찰에 모두 <u>존치</u></li> <li>▶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기능 폐지 및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li> </ul> |

- 경찰개혁위원회의 ‘개혁 권고안’ 의결(’18.4월)을 시점으로, ‘조직 개편·개혁 법령 제정’ 등 본격적인 정보경찰 개혁 작업 착수

|        |                                                                                                                                                                                                                                  |
|--------|----------------------------------------------------------------------------------------------------------------------------------------------------------------------------------------------------------------------------------|
| ’18.4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경찰개혁소위, ‘정보경찰 개혁 권고안’ 의결</li> <li>※ △기능재편 및 기구·인력 축소 △법적근거 마련 및 정보경찰 통제 △정보관리시스템 개선 등</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청, ‘권고안 이행 계획’ 발표</li> <li>※ △‘치안정보’ 용어 변경 △감사관실 정기 사무감사 수감 △민간시설 등 출입 중단 △기구·인력 축소 △정보활동 법적근거 마련 △별관 사무실 본관 이전 △정보관리시스템 개선 등</li> </ul>                                              |
| ’18.7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경찰 행동강령’ 발표 및 ‘준법지원감시팀’ 발족</li> </ul>                                                                                                                                                |
| ’19.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경찰 활동규칙」(경찰청 훈령) 제정·시행 / ◦ 준법지원계 공식 직제화</li> </ul>                                                                                                                                   |
| ’19.3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병훈 의원(민), 정보경찰 개혁법안(「경직법」·「경공법」) 발의 → 임기만료로 폐기</li> <li>▶ (경직법) △‘치안정보’ →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제8조의2 신설</li> <li>▶ (경공법) 정치 관여 금지 규정 신설(5년 이하의 징역·자격정지, 공소시효 10년)</li> </ul> |

- 국정원 개혁과 함께 정보경찰 개혁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며 경찰은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는 상황에 직면

|         |                                                                                                                                                                                                                                                                          |
|---------|--------------------------------------------------------------------------------------------------------------------------------------------------------------------------------------------------------------------------------------------------------------------------|
| ’20.8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병기 의원(민) 등 50명,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8.4.)</li> <li>※ △국내정보 수집 기능 폐지 △명칭 변경(대외안보정보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등</li> <li>◦ 서영교 의원(민) 등 11인, 「경직법」·「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13.)</li> <li>◦ 한병도 의원(민) 등 10인,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14.)</li> </ul> |
| ’20.1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직법」·「경찰법」·「경공법」 등 경찰 개혁법안 <u>국회 본회의 통과</u>(12.9.)</li> <li>◦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u>국회 본회의 통과</u>(12.10.)</li> <li>※ △국내정보 수집 권한 폐지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3년간 시행 유예) 등</li> </ul>                                                         |

- 이에 정보경찰은 개혁 법제화 작업 마무리 등을 통해 준법 정보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국민안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음

|            |                                                 |
|------------|-------------------------------------------------|
| '21.<br>3월 | ◦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시행(3. 23.) |
| '21.<br>6월 | ◦ 「정보경찰 활동규칙」(경찰청 훈령) 개정·시행(6. 14.)             |

### [#붙임3]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 조문 | 제목                  | 주요 내용                                                                                                                                                                                                                                                                                                                                                                                                                                               |
|----|---------------------|-----------------------------------------------------------------------------------------------------------------------------------------------------------------------------------------------------------------------------------------------------------------------------------------------------------------------------------------------------------------------------------------------------------------------------------------------------|
| 1  | 목적                  | 정보활동의 권한조항 명시(경직법 제8조의2)                                                                                                                                                                                                                                                                                                                                                                                                                            |
| 2  | 정보활동의 기본원칙 등        | ① 기본원칙(국민의 자유·권리 보호 목적, 필요 최소한 범위 내 수행)<br>② <b>6가지 금지행위</b> 열거(△정치관여 △불법사찰 △강제적 방법 사용 △부당민원·청탁 전달 △정보 누설·사적이용 △비공식적 직함 사용)<br>③ 현장점검·교육 강화 방안 수립·시행                                                                                                                                                                                                                                                                                                |
| 3  | 수집 등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 ① <b>범죄</b> 의 예방·대응<br>② <b>재범</b> 방지 및 <b>피해자</b> 보호<br>③ <b>국가중요시설</b> 안전 및 <b>주요 인사</b> 보호<br>④ <b>방첩·대테러활동 등 국가안전</b> 을 위한 활동<br>⑤ <b>재난·안전사고 등</b> 으로부터 <b>국민안전</b> 확보<br>⑥ <b>집회·시위 등</b> 으로 인한 <b>공공갈등</b> 과 <b>다중운집</b> 에 따른 <b>질서·안전유지</b><br>⑦ <b>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공공안녕 위협의 예방·대응</b> 을 위한 <b>정책</b><br>* 객관적·필요한 사항에 한정, 직접적·구체적 관련 없는 사생활·신조 등 제외<br>⑧ <b>도로 교통</b> 의 위해 방지·제거 및 원활한 소통<br>⑨ <b>신원조사</b> 또는 <b>사실확인</b><br>⑩ 제1~9호에 준하는 정보 |
| 4  | 정보의 수집 및 사실의 확인 절차  | ① <b>신분 공개 + 목적 설명 + 강제적 방법 사용 금지</b><br>② 신분공개·목적설명 생략 가능한 경우(2가지) 열거 : △생명·신체 안전이나 국가안보에 긴박한 위험 발생 우려 △범죄대응 정보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br>③ 정보제공자 등의 신분·처우 불이익 없도록 비밀유지 등 조치의무                                                                                                                                                                                                                                                                  |
| 5  | 정보 수집 등을 위한 출입의 한계  | △언론·교육·종교·시민사회 단체 등 민간단체 △민간기업 △정당사무소 상시출입 금지 및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시적 출입 가능                                                                                                                                                                                                                                                                                                                                                                           |
| 6  | 정보의 작성              |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중립적으로 작성<br>△정치관여 등 특정한 목적으로 <b>내용 왜곡</b> 금지                                                                                                                                                                                                                                                                                                                                                                                          |
| 7  | 수집·작성한 정보의 처리       | ① <b>목적 외 사용</b> 금지<br>② 필요 시 관계 기관 등 통보 가능<br>③ ' <b>목적 달성 시 폐기</b> '. 다만,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제외                                                                                                                                                                                                                                                                                                                                                    |
| 8  | 위법한 지시의 금지 및 거부     | ① <b>누구든지</b> 정보활동 관련 <b>이 영과 법령에 반하는 지시</b> 금지<br>② 명백히 위법한 지시 집행 거부 가능<br>③ 명백히 위법한 지시 집행 거부 이유로 인사·직무상 불이익 금지                                                                                                                                                                                                                                                                                                                                    |
| 9  | 세부 사항               |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                                                                                                                                                                                                                                                                                                                                                                                                                                   |

## [#붙임4] 세계 주요국가 경찰의 정보활동 현황

| 국가명 | 경찰의 정보활동 내용                                                                                                                                                                                                                                                                                                                                                                                                                                                                                                 |
|-----|-------------------------------------------------------------------------------------------------------------------------------------------------------------------------------------------------------------------------------------------------------------------------------------------------------------------------------------------------------------------------------------------------------------------------------------------------------------------------------------------------------------|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11테러 이후 '05년 신설된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실(ODNI)이 국내 정보기관 조율<br/>※ 중앙정보국(CIA, 해외정보)·부처 정보기관(16개) 등 총 18개 정보기관이 활동</li> <li>9·11테러를 계기로 FBI가 강력한 정보기능 수행, '정보 주도 경찰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50개 州 경찰도 정보부서를 두고 국가안보·공공안전 관련 정보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 &lt;LAPD&gt; '대테러·특수작전국'에서 인종·종교 등 차이로 인한 갈등 관련 정보 수집</li> <li>&gt; &lt;NYPD&gt; '정보국'을 두고, 범죄·테러 등 공공안전 관련 정보 수집</li> <li>&gt; &lt;워싱턴DC&gt; '국토안보국' 산하 '정보과' 등에서 치안활동·공공안녕 관련 정보 수집</li> </ul> </li> </ul> |
| 영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안부(MI5)가 국내 정보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영국 경찰은 '정보주도형 경찰활동'(ILP, Intelligence-led Policing)이 강조되고 있음</li> <li>정보활동의 범위를 지역·광역·국가적 문제의 3단계로 구분하는 국가정보모델(NIM) 도입, 범죄정보뿐만 아니라 사회의 잠재적 위험과 갈등과 관련된 정보 수집</li> </ul>                                                                                                                                                                                                                                                              |
| 프랑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무부 국내안보총국(DGSI)과 경찰청 중앙국토정보부(SCRT)가 국내정보 담당, 경찰청은 '기관, 경제·사회 분야, 폭력현상 등 공공질서 관련 모든 정보' 수집</li> <li>경찰청 중앙국토정보부(SCRT)는 '사회·경제정보과', '공동체·사회문제과' 등 7개 부서를 두고, 공공갈등 관련 정보 수집 → '노란조끼' 시위*('18.11월) 담당</li> </ul> <p>* 유류세 인상을 계기로 反정부 시위로 확산, 주변국(이탈리아·독일·벨기에 등)에도 영향</p>                                                                                                                                                                                               |
| 독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사·정보기관 분리' 원칙에 따라, 해외정보는 총리실 산하 연방정보원(BND), 국내정보는 내무부 산하 연방헌법보호청(BFV)이 담당</li> <li>또한, 州 경찰도 일반 예방활동(경비·교통·방범·범죄 우려자 정보) 등 직무 관련 '위험 방지'를 위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수집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에른州, '17년 「경찰직무법」을 개정하여 독일 최초로 '우려되는 위험'을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도입 → '구체적 위험' 발생 前 단계에서도 직무범위 내 정보수집 가능</li> </ul> </li> <li>통일경찰법모범초안 개정시안 제8조는 △ 집회·다중행사 △ 위험 방지 △ 범죄 등을 수집 대상으로 규정, 공공안녕·질서에 대한 위험 예상 시 개인정보 수집 가능</li> </ul>                                    |

|    |                                                                                                                                                                                                                                                                                                                                        |
|----|----------------------------------------------------------------------------------------------------------------------------------------------------------------------------------------------------------------------------------------------------------------------------------------------------------------------------------------|
| 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국내정보</u>는 법무성 소속 '공안조사청'과 '<u>경찰청</u>'이 담당하며, 총리실 소속 '내각정보조사실'에서 정보기관 間 통합·조율</li> <li>◦ <u>경찰청</u>은 임무조항인 경찰법 제2조 '<u>기타 공공의 안전·질서 유지</u>'를 근거(판례에서도 인정)로, <u>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공안 관련 모든 분야 정보 취급</u></li> <li>◦ 경찰서 공안과는 요원별 담당 기관을 정해 정보 수집, 지·파출소(주재소·교번) 직원들은 각 담당구역에 관한 첩보 수집</li> </ul> |
|----|----------------------------------------------------------------------------------------------------------------------------------------------------------------------------------------------------------------------------------------------------------------------------------------------------------------------------------------|

문 의 처

02)6788-5345